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4918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응수

피고, 피항소인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영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훈

변 론 종 결 2021. 4. 29.

판 결 선 고 2021. 5. 27.

제1 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가단233785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로 변경된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로 변경된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① 주위적으로, D과 피고 B 사이에 2018. 6. 26.경 E에 관하여 체결된 양수도계약을 128,7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128,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②

예비적으로, D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송금행위 및 입금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886 정산금 사건에서 2018. 6. 11. 'D이 원고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60,000,000원은 2018. 7. 11.까지, 나머지 100,000,000원은 각 25,000,000원씩 2018. 8. 13., 같은 해 9. 11., 같은 해 10. 11., 같은 해 11. 12.까지 각 지급하며, 만약 단 1회라도 어기는 경우 D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 전액에 대해 지체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내용 등으로 조정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나. D은 동생인 피고 B에게 2018. 6. 26. (주)를 설립하여 사내이사로 취임하게 한 후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던 애완용품 수입유통업체인 'E'를 (주)에 60,000,000원에 양도했다.

다. 피고 B은 (주)에 2018. 7. 10. 51,000,000원 등을 송금했고, (주)는 2018. 7. 11. 60,000,000원을 D에게 송금했으며, D은 2018. 7. 11. 원고에게 위 60,000,000원을 이 사건 조정에 따른 1회 변제금으로 지급했다.

라. J은 D과 긴밀한 사이로 함께 사업 등을 영위해 온 사람이고, 피고 C는 그 아들이다. J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사업 및 월급 수령, 차용과 변제 등일련의 금전거래에 피고 C 계좌를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D은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정 이후인 2018. 6. 21.부터 2018. 8. 24.까지 사이에만도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 C 계좌로 합계 180,210,000원을 이체하거나 ATM 현금 인출하여 송금했다. 한편 위 기간 동안 피고 C 계좌에서 D에게 송금된 금액도 수 천만원에 이르고, 이 사건 조정

이전 기간에도 합계 수 억원 상당이 피고 C 명의 계좌에서 D 계좌로 송금되거나 반대로 D 계좌에서 피고 C 계좌로 송금되는 등 D와 피고 C 계좌 사이에는 빈번한 금전거래가 있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조정 후 1회 변제금 외에 나머지 돈을 받지 못하자, D, J, 피고 C 등을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은 E 양도와 관련하여 D와 피고 B에 대해 2019. 5. 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했고, 그 뒤 다시 원고가 피고 C 계좌 이체와 관련하여 고소한 사건에서 2020. 11. 26. D, J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피고 C 등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했다. 2020. 11. 26.자 불기소 결정은 “D이 2018. 6. 11.부터 2018. 9. 20.까지 피고 C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합계 203,234,386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 J이 사용한 피고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을 보면 조정 이후에도 J이 이전부터 거래해온 채권자 K와 계속 금원을 주고받고 그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을 D에게 다시 이체해주기도 하며 …”, ”공모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자금을 이체하여 은닉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이유를 기재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5, 16, 17, 20호증, 을가 제3, 5, 9, 10, 15호증, 을나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D이 E를 동생인 피고 B에게 헐값에 양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고, 이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므로, 위 양도계약은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의 이 사건 조정의 원리금 128,7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돼야 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는, D이 피고 C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별지 제1 목록과 같이 합계 70,000,000원을 피고 C에게 송금했고, 이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므로,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취소돼야 하고, 피고 C는 자신이 이득한 7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D이 피고 B에게 E의 영업 일체를 60,000,000원의 헐값에 양도했다는 점을 전제로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기초사실에서의 돈의 이체 과정을 보면, 정확히는 피고 B이 설립하여 자본금을 납입한 (주)에 D이 E의 영업 일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실질을 파악하여, D이 피고 B에게 E의 영업 일체를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나머지를 판단해 본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E 영업 일체의 양도대금이 지나치게 헐값이어서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되어야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60,000,000원이 헐값이라는 원고의 전제사실이 입증돼야 나아가 그 처분으로 인한 D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 D과 피고 B의 사해의사 존부 등을 판단해 볼 수 있다.

E의 실제 가치가 4억원을 초과하는 등 상당했다는 증거로 원고는 위 업체의 2016년, 2017년, 2018년 회계자료들을 들고 있다. 갑 제26호증의 1, 2,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E의 2017. 12. 31. 기준 자산총계는 118,918,820원, 당기순이익은 91,345,756원, 2016. 12. 31. 기준 자산총계는 110,959,341원, 당기순이익은 52,482,329원이고 반면 영업 양도가 된 이후인 2018. 12. 31. 기준 자산총계는 38,050,261원, 당기순이익은 21,052,36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계용으로 작성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만으로 개인업체인 E의 영업 양도시 그 가치를 직접 판단하긴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위 전제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 명의 계좌를 D이 실제 사용했다고 전제하면서, 그 결과 D 명의 수 개의 계좌와 피고 C 명의 수 개의 계좌에서 오랜 기간 입출금이 반복돼온 여러 입금과 출금 내역 중 별지 제1 목록 기재 6건, 금액 합계 70,000,000원의 입금행위 토대가 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만을 떼어내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C 명의 계좌는 D이 아닌 J이 사용하던 계좌라는 것이 피고 C의 주장이고, 그와 달리 D이

사용하던 계좌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D 계좌와 피고 C 계좌 사이에서는 이 사건 조정 이전부터도 수시로 많은 돈이 오고가고 있는데, 만약 피고 C 명의 계좌가 J이 아닌, 오직 D만이 명의수탁받아 사용하던 계좌였다면 것처럼 반복적으로 입금과 출금이 되풀이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원고는 위 계좌들 사이에서 입금과 출금이 반복되는 과정 중 D이 피고 C에게 송금한 것으로 파악되는 입금행위만을 일부 떼어내어 그 각각의 입금시마다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는 취지로 구성한 후 그 개별적인 명의신탁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만약 그와 같은 구성이 가능하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별지 제1 목록의 입금행위 뒤에는 다시 피고 C 계좌에서 D 계좌로의 다른 입금행위 등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각각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과 그에 따른 입금행위로 D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야 한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했지만, 제1심판결은 이와 실질적으로 결론을 같이하고 있어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로 변경된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로 변경된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진화, 판사 이주현, 판사 이승원

제1 목록

별지 송금내역

순번	거래일자	상태	거래금액(원)	출금 은행명	입금 계좌번호()
1	2018-08-07	입금	10,000,000	은행()	(기업은행)
	합계		10,000,000원		

별지 입금내역

순번	거래일자	상태	거래금액(원)	입금 계좌번호()
1	2018-07-27	ATM입금	20,000,000	(기업은행)
2	2018-08-01	ATM입금	10,000,000	(기업은행)
3	2018-08-02	ATM입금	10,000,000	(기업은행)
4	2018-08-03	ATM입금	10,000,000	(기업은행)
6	2018-08-05	ATM입금	10,000,000	(기업은행)
합계			60,000,000	

제2 목록

별지 송금내역

순번	거래일자	상태	거래금액(원)	출금 은행명	입금 계좌번호()
3	2018-06-21	입금	10,100,000	은행()	(기업은행)
4	2018-06-23	입금	10,100,000	은행()	(기업은행)
5	2018-06-25	입금	1,000,000	은행()	(기업은행)
6	2018-06-26	입금	30,000,000	은행()	(기업은행)
8	2018-07-08	입금	7,000,000	우체국()	(기업은행)
9	2018-07-10	입금	1,000,000	우체국()	(기업은행)
10	2018-07-12	입금	2,500,000	은행()	(기업은행)
11	2018-07-13	입금	1,000,000	은행()	(기업은행)
12	2018-07-20	입금	2,000,000	은행()	(기업은행)
14	2018-08-07	입금	1,710,000	우체국()	(기업은행)
15	2018-08-07	입금	10,000,000	은행()	(기업은행)
16	2018-08-13	입금	3,000,000	은행()	(기업은행)
17	2018-08-20	입금	28,540,000	()	(기업은행)
18	2018-08-24	입금	2,260,000	우체국()	(기업은행)
	합계		110,210,000 원		

별지 입금내역

순번	거래일자	상태	거래금액(원)	입금 계좌번호()
1	2018-07-26	ATM입금	10,000,000	(기업은행)
2	2018-07-27	ATM입금	20,000,000	(기업은행)
3	2018-08-01	ATM입금	10,000,000	(기업은행)
4	2018-08-02	ATM입금	10,000,000	(기업은행)
5	2018-08-03	ATM입금	10,000,000	(기업은행)
6	2018-08-05	ATM입금	10,000,000	(기업은행)
합계			70,000,000	

1) 원고는 항소심에서 주위적 청구취지와 그 대상 피고, 예비적 청구취지와 그 대상 피고를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의 일부를 감축했다.